



즉시 배포용: 2017 년 6 월 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여름 업스테이트 및 롱아일랜드에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 발표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법규,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법규,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근로자 재해보상 법규(Workers' Comp Regulations)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시행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복수의 주정부 기관은 6 월 29 일까지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는 당하의 법규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전역으로의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확대는 새로운 교통 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고 혁신을 가져오는 공정성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기틀은 우리 주의 모든 지역사회에 이로운 공정하고 안전한 공유 경제적인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체계의 밑거름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밤에 7 월 4 일 독립기념일 주말에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를 허용하기 위해 열흘간의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승객의 경우:

새 법규에 따르면 운행 시작 전에 요금 또는 예상 요금은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앱에 표시되어 승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앱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

- 운전사의 사진,
- 차량의 제조사, 모델, 색상,
- 차량 번호판의 번호.

또한,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차는 자동차 앞창의 조수석 쪽에 눈에 잘 띄는 엠블럼을 분명히 보이게 진열해서 승객에게 차량이 소속된 기업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자동차부(DMV)는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의 면허 위반에 대한 민원 및 고소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은 고객 민원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의 경우: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 인허가를 취득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자동차부(DMV)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은 승객과 연락하기 위한 앱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료는 10 만 달러이며, 이 중 9 만 달러는 해당 기업에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환급됩니다. 또한, 연간 갱신료 6 만 달러가 발생합니다.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은 승객을 태운 상태의 모든 운행에 대하여 125 만 달러의 차량 책임보험(vehicle liability insurance)을 꼭 제공해야 하며 기업은 운전자에게 근로자 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coverage)을 보험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장애가 있는 이들을 비롯한 모든 승객을 위하여 차별금지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ies)을 도입해야 합니다. 뉴욕주 수송망 기업 장애인 접근성 전담반(New York State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Accessibility Task Force)은 장애우를 위한 효과적인 통합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분석하고 기업에 이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권한을 허가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은 자동차부(DMV)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여기](#)에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는 범죄 경력 신원 조회에 반드시 통과해야 승객을 운송할 수 있으며, 신원 조회에는 운전자의 운행기록 검토도 포함됩니다.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은 교통위반 티켓 발부,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회복 등의 주요 변동 사항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자동차부(DMV)의 면허 변동 알림 시스템(License Event Notification System)에 운전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분은 원하는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에 관련 문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부(DMV)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소지자로서 적어도 만 19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부(DMV)는 차량 요건을 특정하지 않지만, 카풀 차량공유(ride sharing) 기업은 기준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